#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75 발의연월일: 2020. 9. 1.

발 의 자: 한준호·김경만·김영배

김원이 · 김홍걸 · 박성준

박영순・양정숙・오영환

유동수 · 이용우 · 임종성

전용기 • 진선미 • 한병도

홍성국 • 홍익표 • 황운하
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음주·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(일명 '뺑소니')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, 사고 운전자등에게 자기부담금 (사망·부상: 사고 1건당 300만원, 재물 멸실·훼손: 사고 1건당 100만원)을 구상함으로써 민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.

그러나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음주·무면허 및 뺑소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자기부담금 금액이 반사회적 범죄로서 그 사고가 가지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이 러한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험회사등이 음주 · 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

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· 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률상"을 "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"으로,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(求償)할"을 "구상(求償)할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9조(보험금등의 지급 등) ①     | 제29조(보험금등의 지급 등) ① - |
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험회사등은 <u>법률상</u> 손해배상 | <u>해당 보험금등에 상당</u>   |
| 책임이 있는 자에게 <u>국토교통</u> | <u>하는 금액을 법률상</u>    |
| 부렁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(求償)할 수 있다.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3. (생 략)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|